# 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황

- 대덕연구개발특구
  - 첨단융합산업의 글로벌 허브 IT기반 융복합 산업의
- 광주연구개발특구 빛과 문화로 번영하는 세계적 혁신클러스터
- 세계적 거점

대구연구개발특구

- ∮ 부산연구개발특구 R&D기반 조선해양 플랜트 혁신클러스터
- ₹ 전북연구개발특구 농생명과 첨단소재 기반의 세계 일류 R&D허브



# 강소특구 지정 현황

- KIST / 경희대 / 고려대
- 충북대학교
- 🦸 경북구미 금오공과대학교
- ♥ 경남창원 한국전기연구원

- 🥝 경기 안산 한양대 ERICA 캠퍼스
- ₹ 전북 군산 군산대학교
- ❷ 경북 포항 포스텍 RIST
- ₩ 경남 김해 인제대학교

- ₹ 충남 천안이산 한국자동차연구원
- 전남 나주 한국전력공사
- ❷ 경남 진주 경상대학교
- ② 울산울주



## 문의처

담당부서 :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신기술실증특례팀

홈페이지: https://tb.innopolis.or.kr 대표메일: inno\_tb@innopolis.or.kr

# 규제에 자유로운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합니다

#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









##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소개

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특구육성을 통한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술사업화 전문기관입니다

## 연구개발특구 임무 및 연혁

## | 주요임무

[연구개발특구법 제1조]

[연구개발특구법 제2조]

목 적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해 그 지역에 있는 대학·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 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

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

기대효과

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

개 념

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



## | 주요연혁



## 1. 신기술 실증특례란?



기존 법령상 규제\*로 인해 신기술의 실증이 어려울 경우. 규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전(全) 분야의 신기술의 실증을 허용하는 제도

\*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·규격·요건 등이 ①없는 경우, ②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, 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

#### 용어 정의

- 신기술 :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· 개량한 우수한 기술
- 실증 : 연구개발 및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한적 시험 및 기술적 검증

(※ 출처 :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)

# 2. 신청대상



연구개발특구 내에 소재하면서, 공공기술의 실증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한 ①공공연구기관 또는 ②공공기술\*을 실증하려는 중소기업 중 공공연구기관과 실증특례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중소기업

\* 실증특례 신청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기술을 이전받은 경우에 한정

## 3. 유효기가



2년 이내 + 2년 이내 연장 가능(1회 한정)

## 4. 필요서류



● 실증특례 신청서 ● 실증특례 계획서 ● 실증특례 신청 사유서 ● 안전성 확보 계획서

## 5. 심의기준



- ① 신기술의 실증 범위 및 실증방법의 구체성
- ② 실증특례 신청자의 재정적·기술적 능력
- ③ 실증특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의 파급효과
- ④ 이용자 등의 보호방안
- ⑤ 그 밖에 실증특례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특례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## 6. 실증특례 지정절차



#### 1. 실증특례 신청 수요자→과기정통부

• 실증특례 신청서 및 첨부 서류와 함께 과기정통부(특구재단)으로 신청

### 2.관계부처 협의 과기정통부⇔규제소관부처

• 과기정통부 - 접수된 실증특례에 대해 규제 소관 기관으로 통보

#### • 규제소관부처 - 30일(자료보완 요청시 90일) 이내에 규제 유무에 대해 회신

### 3. 실증특례 전문위원회 과기정통부

- 실증특례 관계부처 간 실무협의 진행
- 실증특례 지정관련 사전 심의 의결(부가 조건 설정 등) 및 특구위원회 상정

#### 4. 연구개발특구위원회 과기정통부

• 실증특례 지정 최종 심의 의결

## 5. 실증특례 지정 과기정통부

• 관보 고시 및 관련자에 통보

# 7. 추가지원



| 구분                | 내용   |
|-------------------|--|
| 법률컨설팅             | 실증특례 수요기관에 대한 사전법률상담, 실증특례 대상과제와 관련한<br>인허가사항 및 법률일체에 대한 법률컨설팅 지원  |
| 실증R&D             | 실증특례로 지정된 신기술의 실증·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, 실험·임상,<br>국내외 시험분석·인증 등을 위한 실증사업비 지원   |
| 책임보험              |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인적·물적 손해와 관련한 배상책임 의무를<br>이행하기 위한 보험료 실비 지원  |
| 첨단기술기업            | 신기술 실증특례로 지정된 기술을 첨단기술 분야로 인정하여, 해당 기술을<br>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첨단기술기업*으로 지정 추진<br>*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 분야의 제품을 생산 · 판매하는 특구<br>기업으로 세제 감면, 특구육성사업 참여 시 가산점 부여 등 혜택 보유 |
| 공공(연)-기업<br>매칭 지원 | 실증특례 수요가 있는 특구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연구기관 매칭을 중개하여<br>실증특례 신청 지원   |

# 8. 기대효과



- 연구개발자에게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연구환경 제공
- 규제문제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실증기회 제공
- 공공(연)이 보유한 공인시험시설의 고도화, 유휴시설의 테스트베드화 추진
- 기술적 · 사회적 변화속도에 맞춰 관련 규제 법령의 정비 추진